

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Office of the Chief Financial Officer

Office of Tax and Revenue



날짜: 2008년 8월 22일

수신: DC 담배에 관련된 모든 소매업자와 자동판매기 운영자

제목: 담배 소비세 증가

게시 번호: 2008-07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콜럼비아 특별자치구의 담배 소비세는 DC Code section 4702402(a)에 따라 담배 20개비 한 갑당 1달러에서 2달러로, 담배 25개비 한 갑당 1.25달러에서 2.5달러로 증가합니다. 새로 도입된 소비세율은 이전 납세인이 찍힌 재고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워싱턴 DC지역의 자동판매기 담배,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는 도, 소매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납세인 담배에 적용됩니다.

Floor tax의 총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2008년 10월 1일 영업 시작 이전에, 워싱턴 DC인자가 찍힌 모든 재고, 납세 인자의 재고를 수거해야 하며, Floor tax 신고서와 지침서를 동봉합니다. 담배 Floor tax 신고서(FR-463)와 세금을 2008년 10월 21일 까지 워싱턴 DC 사서함 556, 세무서(the Office of Tax and Revenue) 감사과(Audit Division)담배세 집행부서(Cigarette Tax Enforcement Unit, P.O. Box 556, Washington DC 20044)로 보내주십시오.

Floor tax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Floor tax 납세기한인 2008년 10월 21일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벌금 및 이자가 부가될 것이고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Chapter 24의 위반 또는 Chapter 24[DC Code, 2001 Ed. Section 47-2404(f) 및 47-2422(a)]에서 선포한 법규에 따라 담배 판매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법인은 법인의 모든 지사를 대표하여 신고서 및 세금을 통합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합 신고서 제출시, 각 지사의 Floor tax 적용 재고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사는 조사가 이루어 질 경우를 대비해, Floor tax 신고서 및 재고목록의 사본을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법인이 각 지사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도록 한다면, 개별 담배세 신고서 작성 지침이 적용됩니다.

자동판매기 운영자는 모든 자동판매기의 위치 목록과 Floor tax 신고서를 첨부하여 보내야 합니다. 세금은 자동판매기의 실제 재고 또는 신고서에 명시된 기계당 일률과세 납입으로 계산됩니다.

본 통지서에는 Floor tax 신고서 유용한 질의응답(FAQ) 형식의 참고자료가 동봉되었으며, 본 통지서 사본 및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FAQ 섹션은 웹사이트 www.taxpayersevicecenter.com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Floor tax 신고서와 지침서가 필요한 분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령의 변경 사항에 관련된 질문은 세무서(The Office of Tax and Revenue) 감사과(Audit Division) 전화 (202)402-6602로 문의하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